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신교선 위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기 획 실 장)	일 자	질의 : 2000년 12월12일 답변 : 2000년 12월13일
회 의	제82회평창군의회 (정례회) 제1차 예결특위		
<p>【 질의요지 】</p> <p>○ 2001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</p>			
<p>【 답변요지 】</p> <p>○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(별첨)</p> <p>○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편성현황 (별첨)</p> <p>○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(2000년도와 동일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기준액 : 185,000천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강원도에서 10.23일 예산담당회의시 보완지침으로 시달)</p> <p>※ 기준액 내시 공문 사본 (별첨)</p>			

업무추진비 편성현황

(단위 : 천원)

목 별	구 분	2001년도
총 계		411,470
기관운영업무추진비	소 계	125,400
	군 수	48,000
	부 군 수	33,000
	의 료 원 장	3,000
	농업기술센터소장	3,000
	읍. 면 장	38,400 (읍면 4,800)
정원가산업무추진비	소 계	22,410
	군 수	12,540
	의 료 원 장	2,640
	농업기술센터소장	1,710
	읍. 면 장	4,800
	의 회	72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소 계	185,000
	군 수	133,400
	부 군 수	14,800
	실 과 장	7,200
	읍 면 장	29,600
부서운영업무추진비	소 계	78,660
	본 청	49,860
	읍 면	28,800

○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편성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서별	총계	의 회 사무과	기획실	자 치 행정과	문 화 관광과	환 경 복지과	건설과	농업기술 센터	읍. 면
금액	185,000	2,000	3,200	121,200	12,000	6,000	5,000	6,000	29,600

2. 지침 보완사항

① 업무추진비 주석(註釋) 추가(74~75p)
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집행대상 주석에 다음사항 추가
 - 5) 시·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5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 - 6) 시·군·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
- 기초의회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에 있어 주석에 다음사항 추가
 - 3)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(기초의회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)

② 직급보조비 기준액 정정(76p)

- 직급보조비 기준액중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의 기준액 변경

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	당 초	⇒	변 경
	1급월액 400		1급월액 420천원

※ 오기된 금액을 정정하는 것임

③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적용(86p)
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시달
 - 2001년도 시·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